

1. 개정이유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을 연장하는 한편,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위탁기관을 석유관리원으로 조정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공업원료용 천연가스(LNG) 환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절차 및 서식 정비 (안 제21조제8항, 제22조제5호, 제23조제12호, 제24조제1항제7호 및 같은조 제2항제1호~4호, 제24조의2제4항, 제25조제1항)

나. 전자상거래 거래물량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물량 산출 기준을 명시 (안 제21조제5항, 제24조제1항, 제25조의2제6항~7항)

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위탁기관명을 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하고, 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절차를 조정 (안 제9조의2제5~6항,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2항, 제20조, 제24조제1항제6호, 제24조제5항, 제27조제2항, 제32조제1항~3항 및 제5항, 제33조제1항~2항, 제34조제1항~3항, 제37조)

라. 기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등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바이오디젤연료유”를 “바이오디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바이오에탄올연료유”를 “바이오에탄올”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6. 바이오중유 : 1리터당 16원

제9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
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
에 관한 법률」”로, “근로자의 날인”을 “노동절인”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

다) 사장”을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사 사장”을 “관리원 이사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 사장”을 각각 “관리원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징수유예대상자 및 관리원 이사장”을 “징수유예대상자”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결정하여 공사 사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공사 사장은”을 “결정하고,”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2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천연가스를 규칙 제3조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제5호 중 “제21조제6항·제7항”을 “제21조제6항·제7항·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1조제제8항”을 “제21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1조제9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제23조제10호 중 “제21조제9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21조제6항·제7항”을 “제21조제6항·제7항·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제21조제8항”을 “제21조제9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하며”를 “산출하고”로, “아니 한

다”를 “아니하며, 제23조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사”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을 각각 “환급대상물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충당하거나,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 징수하도록 요청”을 “충당하거나 징수”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1조제8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은 환급대상물량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에 제25조의2에 의해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나프타”를 “천연가스, 나프타”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관리원 이사장은 KRX 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비율을 계산(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다음 각 호의 부과금 환급률을 적용한다. 다만, 전년도 실

적이 없는 경우 제4호의 환급률을 적용한다.

거래량 비율 = 당해연도 해당 분기 KRX 석유시장 거래량 ÷ 직전
년도 해당 분기 KRX석유시장 거래량

1. 거래량 비율 0.8 미만 : 50%
2. 거래량 비율 0.8 이상 ~ 0.9 미만 : 70%
3. 거래량 비율 0.9 이상 ~ 1.0 미만 : 80%
4. 거래량 비율 1.0 이상 : 100%

⑦ KRX 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해당 분기 환급률은 해당 분
기 실적으로 산출된 환급률을 적용한다.

제27조제2항 중 “7근무일”을 “5근무일”로 한다.

제31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산업통
상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제21조제7항”을 “제21조
제9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공사 사장”을 각각 “관리원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관리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 환급하도록 요청”을 “환
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사 사장”을 “관리원 이사장”으로 한
다.

제33조제1항 중 “충당하거나, 공사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를 “충
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사 사장”을 “관리원 이사장”으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

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 사장과 관리원”을 “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 공사 사장 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 사장 또는 관리원”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3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공사, 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관리원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기타 석유화학공업체의 구분란 중 “나프타 또는”을 “천연가스, 나프타 또는”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1호 중 “한국석유공사 관리본부장”을 “한국석유관리원 이사”로 하고, “201”을 “20”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2호의 제목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를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로 한다.

별지서식 제2호 중 “제21조제2항 및 제4항”을 “제21조제2항·제4항·제8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석유제품명”을 “제품명”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2호의 2의 제목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를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로 한다.

별지서식 제10호 중 “한국석유공사사장”을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11호 중 “한국석유공사사장”을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환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고
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석유제품을 거래하였으나 부과금을
환급받지 않았을 경우 이 고시의 연간한도 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바이오디젤연료유</u> : 1리터당 16원	4. <u>바이오디젤</u> ----- --
5. <u>바이오에탄올연료유</u> : 1리터당 16원	5. <u>바이오에탄올</u> ----- -----
<u><신 설></u>	6. <u>바이오중유</u> : 1리터당 16원
8. (생 략)	7.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천연가스 용도별 부과금 단가 적용) ① ~ ④ (생 략)	제9조의2(천연가스 용도별 부과금 단가 적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된 징수금액을 별도 정산할 경우 수입징수관은 그 초과금액을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관리원 이사장은 그 초과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u>	<u><삭 제></u>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제3항 내지 제6항의 경우 법 제18조제4항의 가산금, 법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의 가산금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①·② (생략)

③ 부과금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13조의2(체납처분의 중지) ①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산업통상자원부

⑥ ----- 제5항-----

--.

제10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노동절인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체납처분의 중지) ① -----

----- 산업통상부장관-----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산업통상부장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6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하는 부과금은 제8조
에 따른 부과금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되는 부과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
별회계의 세입·세출 수지상황
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징
수유예물량에 제8조에 따른 부
과금 징수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담보의 제공) ① (생략)

② 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은행도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백지수표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석유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
을 수취인으로 하여야 한다.

1. 2.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금액) -

-----.

----- 산업통상부장관-----

-----.

제17조(담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한국석유관
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이사장-----.

1.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징수유예금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사 사장은 백지수표에 징수유예한 금액과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합계한 금액을 보충하여 추심하여야 한다.

제18조(징수유예의 확인) ①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17조에 따른 담보와 규칙 제25조에 따른 부과금 신고서를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1. 2. (생략)

② 공사 사장은 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자의 부과금 신고서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금 징수유예의 사실을 표시하여 징수유예대상자 및 관리원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제20조(징수유예분의 환급 및 징수) 징수유예분 중 환급대상이 있는 경우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금을 결정하여 공사 사장에게

③ (현행과 같음)

④ -----
----- 관
리원 이사장-----

-----.

제18조(징수유예의 확인) ① ----

관리원 이사장-----

--.

1. 2. (현행과 같음)

② 관리원 이사장-----

----- 징
수유예대상자-----
-----.

제20조(징수유예분의 환급 및 징수) -----

---- 결정하고, -----

통보해야 하고, 공사 사장은 징수유예분에서 환급금을 상계처리하여 징수유예기한 내에 차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전월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환급금이 징수유예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금액을 최종 환급금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한 부과금의 환급은 부과금의 징수유예 기한 이후에 지급한다.

제21조(부과금의 환급대상) ① (생략)

②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석유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공급한 경우에 한한다.

1. 2. (생략)

3.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제7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에틸렌을 말한다)을 석유화학, 비료, 카본블랙 및 이산화티타늄제조 원료로 공급

③ ④ (생략)

-----.

-----.

-----.

제21조(부과금의 환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산업통상부장관-----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월간 및 연간 한도내에서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이하 “KRX석유시장”이라 한다)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월간 및 연간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은 이월하지 않으며, 석유 유통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환급된 부과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 3. (생략)

⑥·⑦ (생략)

<신설>

⑧·⑨ (생략)

제22조(부과금 환급신청자) 부과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명의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⑤ ----- 다

음 -----

-----.

1. ~ 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2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천연가스를 규칙 제3조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22조(부과금 환급신청자) -----

-----.

1. ~ 4. (생략)
5. 제21조제6항·제7항의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공급한 자
6. 제21조제제8항의 경우에는 다변화원유를 도입한 자
7. 제21조제9항의 경우에는 부과금을 과오납한 자

제23조(환급액의 산출방법) 부과금의 환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부과금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한 월의 전전월에 수입신고 수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가 없거나,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공급한 물량이 전전월의 수입신고 수리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월의 실적을 적용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전전월 또는 최근 월의 부과금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실적을 적용한다.

1. ~ 9. (생략)
10. 제21조제9항에 따라 부과금

을 과오납한 경우

11. (생략)

12. 제21조제6항·제7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13.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변화 원유를 도입하는 경우

제24조(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및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된 석유제품량의 산출) ① 제23조제1호, 제6호 및 제11호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한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제23조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소요량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제1항제11호에 따라 제공되는 과세정보를 포함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

11. (현행과 같음)

12. 제21조제6항·제7항·제8항

13. 제21조제9항-----

제24조(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및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된 석유제품량의 산출) ① -----

산출하고, -----

----- 아니하며, 제23조제9

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25

조의2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 환

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1. -----

----- 산업통상부장관-----

량

2. ~ 5. (생략)

6. 제21조제3항 중 부과금면제
량의 석유로 비축하는 경우로
써 공사 사장이 확인(별지서
식 제3호)하는 물량

7. 제21조제5항의 경우에는 석
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
하여 거래한 경우로써 석유제
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
서식 제2호의 2)에 따라 신고
된 물량

② 제23조제3호의 환급대상 석
유량은 다음 각 호의 물량에 제
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
한다. 다만, 제1호(프로필렌, 에
틸렌을 제외한다), 제3호 및 제4
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
라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을 곱
하고 제26조에 따른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
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
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
을 석유화학 또는 카본블랙제

--

2. ~ 5. (현행과 같음)

6. -----

-- 「한국석유공사법」에 따
른 한국석유공사 -----

7. -----

----- 환급대
상물량 -----

② -----

---. -----

-----.

1. -----

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

2.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비료 또는 이산화티타늄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

3.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

4.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을 윤활기유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

③·④ (생략)

⑤ 관리원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공제물량을 검토하여 수입부

 -- 환급대상물량 -----

2. -----

 -- 환급대상물량 -----

3. -----
 ----- 환급
대상물량 -----

 --

4. -----

환급대상물량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과금 환급 시에 충당하거나,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 징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2(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의 산출) ① 제21조제6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별지 서식 제9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한다. 다만,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이하 “한국가스공사”라 한다)에서 직접 공급한 천연가스 양의 확인은 제1호에 한한다.

1. ~ 3. (생략)
 4. 삭제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
- ② (생략)
- ③ 제21조제7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한다.

1. (생략)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

<신설>

----- 충당하거나 징수

-----.

제24조의2(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의 산출)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5. 산업통상부장관-----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1. (현행과 같음)
2. 산업통상부장관-----

④ 제21조제8항의 환급대상 천

연가스 사용량은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에 제25조의2에 의
해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을 곱
하여 산출한다.

제25조(부과금 환급률 자료제출)

① 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
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
을 석유화학, 카본블랙 제조 원
료용으로 공급하여 부과금의 환
급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자료를 제2항에 따
른 기한 내에 관리원 이사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
호의 용도별 판매실적에 대한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
는 관리원 이사장이 따로 정하
는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5조의2(부과금 환급률 산정 및 적용) ① 관리원 이사장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1건으로 일괄하여 아래 산식에 따

제25조(부과금 환급률 자료제출)

① 천연가스, 나프타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부과금 환급률 산정 및 적용) ① -----

라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부과금 환급률을 산정한 다음 신고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분기 환급률 산정시에 함께 산정한다.

② 관리원 이사장은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과금 환급률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신고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 이사장은 윤활기유 제조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과금 환급률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신고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부장관-----
-----.

-----.

② -----

----- 산업통상부장관-----
-----.
-----.

③ -----

----- 산업통상부장관-----
-----.

④·⑤ (생략)

<신설>

<신설>

제27조(환급신청 및 환급금결정)

① (생략)

②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21조의 환급대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당월 13일 및 2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관리원 이사장은 KRX 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비율을 계산(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다음 각 호의 부과금 환급률을 적용한다. 다만,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제4호의 환급률을 적용한다.

1. 거래량 비율 0.8 미만 : 50%

2. 거래량 비율 0.8 이상 ~ 0.9 미만 : 70%

3. 거래량 비율 0.9 이상 ~ 1.0 미만 : 80%

4. 거래량 비율 1.0 이상 : 100%

⑦ KRX 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해당 분기 환급률은 해당 분기 실적으로 산출된 환급률을 적용한다.

제27조(환급신청 및 환급금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3일까지 신청된 환급신청서를
각 1건으로 일괄하여 7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
며, 환급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석유
부과금환급통지서(별지서식 제
6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1조의2(다변화원유 환급 지원
금액 등 제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
의 목적 또는 에너지자원사업특
별회계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
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의3(다변화원유 환급 요건
등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에너지
수급비상대책본부에서 국내 원
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차질 발생이 우려되어 다변화
지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1조제7항 요건
에도 불구하고 환급할 수 있다.

제32조(과오납 부과금 등의 신청

----- 5근무일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다변화원유 환급 지원
금액 등 제한) 산업통상부장관

-----.

제31조의3(다변화원유 환급 요건
등 완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제21조제9항 ----
-----.

제32조(과오납 부과금 등의 신청

및 환급) ① 과오납한 부과금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계좌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부과금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사장이 과오납 사실을 안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 사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과오납한 부과금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금을 수입부과금 납부 시에 충당하거나, 관리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 환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공사 사장은 과오납 환급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과다환급금의 징수) ① 관

및 환급) ① -----

--- 관리원 이사장-----
---.

② 관리원 이사장-----

--.

③ 관리원 이사장-----

-- 환급-----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원 이사장-----

-----.

제33조(과다환급금의 징수) ① --

중당

② 관리원 이사장

.

장관

산업통상부

제34조(자료요구 및 실시조사) ①

관리원 -----

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공사 사장 또는 관리원 이사장은 조사할 내용 및 조사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 사장 또는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3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과금 정책 관련 자문 등을 위하여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 -----

-----.

③ 관리원 -----

-----.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

-----.

제36조(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산업통상부장관-----

<p>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 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 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37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u>공사, 관리 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u>2025년 7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p>----- ----- -----.</p> <p>제37조(기타사항) ----- ----- <u>관리원이 산 업통상부장관</u>----- -----.</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 <u>2026년 3 월 20일</u>-----.</p> <p>제2조(<u>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 입부과금 환급에 관한 경과규 정</u>)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석유제품을 거 래하였으나 부과금을 환급받지 않았을 경우 이 고시의 연간한 도 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p>
--	---